Royal PARK CITY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PRUGIO

[중요]
※ 본 아파트는 선시공(23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60.1%) 아파트로 2024년 09월 입주 예정이오니, 청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비확장형 세대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선시공 품목인 발코니 확장을 별도로 반드시 계약하여야 하며, 발코니 확장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공사 진행 중인 아파트이므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선시공 아파트로 세대의 기시공된 기본옵션, 발코니확장 등 모든 내부여건을 파악하고 계약해야하며 기 시공된 사항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변경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공청기능 포함) 및 빌트인냉장고(컬럼식 3열)는 기본 제공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전실 설치 / 냉장고는 주방에 설치되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변경 및 추가공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주택과 – 19208호(2023.11.2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9층 15개동 총 1,50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706세대(일반[기관추천] 140세대, 다자녀가구 147세대, 신혼부부 253세대, 노부모부양 41세대, 생애최초 12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사용검사일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23000640	01	059.9515A	59A	59.9515	19.7896	79.7411	38.3625	118.1036	37.6595	160	16	16	28	4	14	78	82	7
		02	059.9617B	59B	59.9617	20.2528	80.2145	38.3691	118.5836	37.6659	203	20	20	36	6	18	100	103	8
		03	074.4553A	74A	74.4553	23.6185	98.0738	47.6434	145.7172	46.7702	199	19	19	35	5	17	95	104	8
		04	074.2428B	74B	74.2428	24.7457	98.9885	47.5074	146.4959	46.6368	248	24	24	44	7	22	121	127	10
		05	084.9858A	84A	84.9858	26.3855	111.3713	54.3818	165.7531	53.3851	252	25	25	45	7	22	124	128	12
		06	084.9540B	84B	84.9540	25.9264	110.8804	54.3615	165.2419	53.3652	254	25	25	45	7	22	124	130	10
		07	084.9804C	84C	84.9804	26.1807	111.1611	54.3784	165.5395	53.3817	114	11	11	20	3	10	55	59	4
		08	099.8133	99	99.8133	30.2919	130.1052	63.8698	193.9750	62.6993	70	–	7	–	2	–	9	61	4
		합 계									1,500	140	147	253	41	125	706	794	63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공급세대수	동호구분	층구분	해당세대수	공급금액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10%)	중도금(60%) 1회(20%) 2024-03-05	2회(20%) 2024-05-05	3회(20%) 2024-07-05	잔금(30%) 입주지정기간
59A	160	105동3호	1	1	240,895,000	255,305,000	–	496,200,000	49,620,000	99,240,000	99,240,000	99,240,000	148,860,000
		106동2호	1	1	240,895,000	242,505,000	–	483,400,000	48,340,000	96,680,000	96,680,000	96,680,000	145,020,000
		112동3호, 112동4호	1	2	240,895,000	248,505,000	–	489,400,000	48,940,000	97,880,000	97,880,000	97,880,000	146,820,000
		106동2호	2	1	240,895,000	253,205,000	–	494,100,000	49,410,000	98,820,000	98,820,000	98,820,000	148,230,000
		104동3호	2	1	240,895,000	260,005,000	–	500,900,000	50,090,000	100,180,000	100,180,000	100,180,000	150,270,000
		112동3호, 112동4호	2	2	240,895,000	255,705,000	–	496,600,000	49,660,000	99,320,000	99,320,000	99,320,000	148,980,000
		105동3호	2	1	240,895,000	266,005,000	–	506,900,000	50,690,000	101,380,000	101,380,000	101,380,000	152,070,000
		104동3호, 112동3호, 112동4호	3	3	240,895,000	266,405,000	–	507,300,000	50,730,000	101,460,000	101,460,000	101,460,000	152,190,000
		104동4호	3	1	240,895,000	270,705,000	–	511,600,000	51,16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53,480,000
		105동3호	3	1	240,895,000	276,705,000	–	517,600,000	51,760,000	103,520,000	103,520,000	103,520,000	155,280,000
		105동4호	3	1	240,895,000	281,005,000	–	521,900,000	52,190,000	104,380,000	104,380,000	104,380,000	156,570,000
		106동2호	3	1	240,895,000	263,905,000	–	504,800,000	50,480,000	100,960,000	100,960,000	100,960,000	151,440,000
		104동3호, 104동4호, 112동3호, 112동4호	4	4	240,895,000	270,705,000	–	511,600,000	51,160,000	102,320,000	102,320,000	102,320,000	153,480,000
		105동3호, 105동4호	4	2	240,895,000	281,005,000	–	521,900,000	52,190,000	104,380,000	104,380,000	104,380,000	156,570,000
		106동2호	4	1	240,895,000	268,105,000	–	509,000,000	50,9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52,700,000
		104동3호, 104동4호, 112동3호, 112동4호	5~10	24	240,895,000	279,305,000	–	520,200,000	52,020,000	104,040,000	104,040,000	104,040,000	156,060,000
		105동3호, 105동4호	5~10	12	240,895,000	289,505,000	–	530,400,000	53,040,000	106,080,000	106,080,000	106,080,000	159,120,000
		106동2호	5~10	6	240,895,000	276,705,000	–	517,600,000	51,760,000	103,520,000	103,520,000	103,520,000	155,280,000
		104동3호, 104동4호, 112동3호, 112동4호	11~20	40	240,895,000	282,705,000	–	523,600,000	52,360,000	104,720,000	104,720,000	104,720,000	157,080,000
		105동3호, 105동4호	11~20	20	240,895,000	292,905,000	–	533,800,000	53,380,000	106,760,000	106,760,000	106,760,000	160,140,000
		106동2호	11~20	10	240,895,000	280,105,000	–	521,000,000	52,100,000	104,200,000	104,200,000	104,200,000	156,300,000
		104동3호, 104동4호, 112동3호, 112동4호	21~27	16	240,895,000	286,105,000	–	527,000,000	52,700,000	105,400,000	105,400,000	105,400,000	158,100,000
		106동2호	21~29	9	240,895,000	283,505,000	–	524,400,000	52,440,000	104,880,000	104,880,000	104,880,000	157,320,000
59B	203	101동1호	1	1	240,936,000	250,464,000	–	491,400,000	49,140,000	98,280,000	98,280,000	98,280,000	147,420,000
		103동1호	1	1	240,936,000	248,764,000	–	489,700,000	48,970,000	97,940,000	97,940,000	97,940,000	146,910,000
		105동1호	1	1	240,936,000	258,264,000	–	499,200,000	49,920,000	99,840,000	99,840,000	99,840,000	149,760,000
		106동1호	1	1	240,936,000	253,864,000	–	494,800,000	49,480,000	98,960,000	98,960,000	98,960,000	148,440,000
		107동1호, 108동4호	1	2	240,936,000	257,364,000	–	498,300,000	49,830,000	99,660,000	99,660,000	99,660,000	149,490,000
		101동1호	2	1	240,936,000	261,264,000	–	502,200,000	50,220,000	100,440,000	100,440,000	100,440,000	150,660,000
		102동1호	2	1	240,936,000	265,564,000	–	506,500,000	50,650,000	101,300,000	101,300,000	101,300,000	151,950,000
		103동1호	2	1	240,936,000	259,464,000	–	500,400,000	50,040,000	100,080,000	100,080,000	100,080,000	150,120,000
		104동1호	2	1	240,936,000	263,764,000	–	504,700,000	50,470,000	100,940,000	100,940,000	100,940,000	151,410,000
		105동1호	2	1	240,936,000	268,964,000	–	509,900,000	50,990,000	101,980,000	101,980,000	101,980,000	152,970,000
		106동1호, 107동1호	2	2	240,936,000	264,664,000	–	505,600,000	50,560,000	101,120,000	101,120,000	101,120,000	151,680,000
		108동4호	2	1	240,895,000	268,105,000	–	509,000,000	50,900,000	101,800,000	101,800,000	101,800,000	152,700,000
		101동1호, 102동1호	3	2	240,936,000	271,964,000	–	512,900,000	51,290,000	102,580,000	102,580,000	102,580,000	153,870,000
		103동1호, 104동1호	3	2	240,936,000	270,264,000	–	511,200,000	51,120,000	102,240,000	102,240,000	102,240,000	153,360,000
		105동1호	3	1	240,936,000	279,764,000	–	520,700,000	52,070,000	104,140,000	104,140,000	104,140,000	156,210,000
		106동1호, 107동1호	3	2	240,936,000	275,464,000	–	516,400,000	51,640,000	103,280,000	103,280,000	103,280,000	154,920,000
		108동4호	3	1	240,936,000	278,864,000	–	519,800,000	51,980,000	103,960,000	103,960,000	103,960,000	155,940,000
		101동1호, 102동1호	4	2	240,936,000	276,264,000	–	517,200,000	51,720,000	103,440,000	103,440,000	103,440,000	155,160,000
		103동1호, 104동1호	4	2	240,936,000	274,564,000	–	515,500,000	51,550,000	103,100,000	103,100,000	103,100,000	154,650,000
		105동1호	4	1	240,936,000	284,064,000	–	525,000,000	52,500,000	105,000,000	105,000,000	105,000,000	157,500,000
		106동1호, 107동1호	4	2	240,936,000	279,764,000	–	520,700,000	52,070,000	104,140,000	104,140,000	104,140,000	156,210,000
		108동4호	4	1	240,936,000	283,164,000	–	524,100,000	52,410,000	104,820,000	104,820,000	104,820,000	157,230,000
		101동1호, 102동1호	5~10	12	240,936,000	284,864,000	–	525,800,000	52,580,000	105,160,000	105,160,000	105,160,000	157,740,000
		103동1호, 104동1호	5~10	12	240,936,000	283,164,000	–	524,100,000	52,410,000	104,820,000	104,820,000	104,820,000	157,230,000
		105동1호	5~10	6	240,936,000	292,664,000	–	533,600,000	53,360,000	106,720,000	106,720,000	106,720,000	160,080,000
		106동1호, 107동1호	5~10	12	240,936,000	288,364,000	–	529,300,000	52,930,000	105,860,000	105,860,000	105,860,000	158,790,000
		108동4호	5~10	6	240,936,000	291,764,000	–	532,700,000	53,270,000	106,540,000	106,540,000	106,540,000	159,810,000
		101동1호, 102동1호	11~20	20	240,936,000	288,364,000	–	529,300,000	52,930,000	105,860,000	105,860,000	105,860,000	158,790,000
		103동1호, 104동1호	11~20	20	240,936,000	286,664,000	–	527,600,000	52,760,000	105,520,000	105,520,000	105,520,000	158,280,000
		105동1호	11~20	10	240,936,000	296,064,000	–	537,000,000	53,700,000	107,400,000	107,400,000	107,400,000	161,100,000
		106동1호, 107동1호	11~20	20	240,936,000	291,764,000	–	532,700,000	53,270,000	106,540,000	106,540,000	106,540,000	159,810,000
		108동4호	11~20	10	240,936,000	295,264,000	–	536,200,000	53,620,000	107,240,000	107,240,000	107,240,000	160,860,000
		101동1호, 102동1호	21~29	16	240,936,000	291,764,000	–	532,700,000	53,270,000	106,540,000	106,540,000	106,540,000	159,810,000
		103동1호, 104동1호	21~23	6	240,936,000	290,064,000	–	531,000,000	53,100,000	106,200,000	106,200,000	106,200,000	159,300,000
		105동1호	21~23	3	240,936,000	299,564,000	–	540,500,000	54,050,000	108,100,000	108,100,000	108,100,000	162,150,000
		106동1호, 107동1호	21~29	17	240,936,000	295,264,000	–	536,200,000	53,620,000	107,240,000	107,240,000	107,240,000	160,860,000
		108동4호	21~23	3	240,936,000	298,664,000	–	539,600,000	53,960,000	107,920,000	107,920,000	107,920,000	161,880,000
74A	199	112동1호, 112동2호	1	2	299,174,000	310,026,000	–	609,200,000	60,920,000	121,840,000	121,840,000	121,840,000	182,760,000
		113동1호, 113동2호	1	2	299,174,000	305,826,000	–	605,000,000	60,500,000	121,000,000	121,000,000	121,000,000	181,500,000
		106동4호, 107동3호	2	2	299,174,000	320,026,000	–	619,200,000	61,920,000	123,840,000	123,840,000	123,840,000	185,760,000
		109동4호	2	1	299,174,000	317,926,000	–	617,100,000	61,710,000	123,420,000	123,420,000	123,420,000	185,130,000
		110동4호	2	1	299,174,000	329,526,000	–	628,700,000	62,870,000	125,740,000	125,740,000	125,740,000	188,610,000
		112동1호, 112동2호, 113동1호, 113동2호	2	4	299,174,000	319,026,000	–	618,200,000	61,820,000	123,640,000	123,640,000	123,640,000	185,460,000
		106동4호, 107동3호	3	2	299,174,000	327,926,000	–	627,100,000	62,710,000	125,420,000	125,420,000	125,420,000	188,130,000
		109동4호	3	1	299,174,000	325,826,000	–	625,000,000	62,500,000	125,000,000	125,000,000	125,000,000	187,500,000
		110동4호	3	1	299,174,000	337,426,000	–	636,600,000	63,660,000	127,320,000	127,320,000	127,320,000	190,980,000
		112동1호, 112동2호, 113동1호, 113동2호	3	4	299,174,000	332,126,000	–	631,300,000	63,130,000	126,260,000	126,260,000	126,260,000	189,390,000
		106동4호, 107동3호	4	2	299,174,000	333,226,000	–	632,400,000	63,240,000	126,480,000	126,480,000	126,480,000	189,720,000
		109동4호	4	1	299,174,000	331,126,000	–	630,300,000	63,030,000	126,060,000	126,060,000	126,060,000	189,090,000
		110동4호	4	1	299,174,000	342,726,000	–	641,900,000	64,190,000	128,380,000	128,380,000	128,380,000	192,570,000
		112동1호, 112동2호, 113동1호, 113동2호	4	4	299,174,000	337,426,000	–	636,600,000	63,660,000	127,320,000	127,320,000	127,320,000	190,980,000
		106동4호, 107동3호	5~10	12	299,174,000	343,726,000	–	642,900,000	64,290,000	128,580,000	128,580,000	128,580,000	192,870,000
		109동4호	5~10	6	299,174,000	341,626,000	–	640,800,000	64,080,000	128,160,000	128,160,000	128,160,000	192,240,000
		110동4호	5~10	6	299,174,000	353,226,000	–	652,400,000	65,240,000	130,480,000	130,480,000	130,480,000	195,720,000
		112동1호, 112동2호, 113동1호, 113동2호	5~10	24	299,174,000	347,926,000	–	647,100,000	64,710,000	129,420,000	129,420,000	129,420,000	194,130,000
		106동4호, 107동3호	11~20	20	299,174,000	347,926,000	–	647,100,000	64,710,000	129,420,000	129,420,000	129,420,000	194,130,000
		109동4호	11~20	10	299,174,000	345,826,000	–	645,000,000	64,5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93,500,000
		110동4호	11~20	10	299,174,000	357,426,000	–	656,600,000	65,660,000	131,320,000	131,320,000	131,320,000	196,980,000
		112동1호, 112동2호, 113동1호, 113동2호	11~20	40	299,174,000	352,126,000	–	651,300,000	65,130,000	130,260,000	130,260,000	130,260,000	195,390,000
		106동4호, 107동3호	21~29	17	299,174,000	352,126,000	–	651,300,000	65,130,000	130,260,000	130,260,000	130,260,000	195,390,000
		109동4호	21~23	3	299,174,000	350,026,000	–	649,200,000	64,920,000	129,840,000	129,840,000	129,840,000	194,760,000
		110동4호	21~23	3	299,174,000	361,626,000	–	660,800,000	66,080,000	132,160,000	132,160,000	132,160,000	198,240,000
		112동1호, 112동2호, 113동1호, 113동2호	21~27	20	299,174,000	356,326,000	–	655,500,000	65,550,000	131,100,000	131,100,000	131,100,000	196,650,000
74B	248	101동2호, 103동2호	1	2	298,320,000	307,080,000	–	605,400,000	60,540,000	121,080,000	121,080,000	121,080,000	181,620,000
		102동2호	1	1	298,320,000	311,280,000	–	609,600,000	60,960,000	121,920,000	121,920,000	121,920,000	182,880,000
		106동3호, 108동3호, 109동3호	1	3	298,320,000	296,380,000	–	594,700,000	59,470,000	118,940,000	118,940,000	118,940,000	178,410,000
		107동2호	1	1	298,320,000	300,680,000	–	599,000,000	59,900,000	119,800,000	119,800,000	119,800,000	179,700,000
		101동2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2	4	298,320,000	320,280,000	–	618,600,000	61,860,000	123,720,000	123,720,000	123,720,000	185,580,000
		105동2호	2	1	298,320,000	336,280,000	–	634,600,000	63,460,000	126,920,000	126,920,000	126,920,000	190,380,000
		106동3호, 107동2호, 108동3호, 109동3호	2	4	298,320,000	309,680,000	–	608,000,000	60,800,000	121,600,000	121,600,000	121,600,000	182,400,000
		110동3호	2	1	298,320,000	325,580,000	–	623,900,000	62,390,000	124,780,000	124,780,000	124,780,000	187,170,000
		101동2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3	4	298,320,000	333,580,000	–	631,900,000	63,190,000	126,380,000	126,380,000	126,380,000	189,570,000
		105동2호	3	1	298,320,000	344,180,000	–	642,500,000	64,250,000	128,500,000	128,500,000	128,500,000	192,750,000
		106동3호, 107동2호, 108동3호, 109동3호	3	4	298,320,000	322,980,000	–	621,300,000	62,130,000	124,260,000	124,260,000	124,260,000	186,390,000
		110동3호	3	1	298,320,000	333,580,000	–	631,900,000	63,190,000	126,380,000	126,380,000	126,380,000	189,570,000
		101동2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4	4	298,320,000	338,880,000	–	637,200,000	63,720,000	127,440,000	127,440,000	127,440,000	191,160,000
		105동2호	4	1	298,320,000	349,480,000	–	647,800,000	64,780,000	129,560,000	129,560,000	129,560,000	194,340,000
		106동3호, 107동2호, 108동3호, 109동3호	4	4	298,320,000	328,280,000	–	626,600,000	62,660,000	125,320,000	125,320,000	125,320,000	187,980,000
		110동3호	4	1	298,320,000	338,880,000	–	637,200,000	63,720,000	127,440,000	127,440,000	127,440,000	191,160,000
		101동2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5~10	24	298,320,000	349,480,000	–	647,800,000	64,780,000	129,560,000	129,560,000	129,560,000	194,340,000
		105동2호	5~10	6	298,320,000	360,180,000	–	658,500,000	65,850,000	131,700,000	131,700,000	131,700,000	197,550,000
		106동3호, 107동2호, 108동3호, 109동3호	5~10	24	298,320,000	338,880,000	–	637,200,000	63,720,000	127,440,000	127,440,000	127,440,000	191,160,000
		110동3호	5~10	6	298,320,000	349,480,000	–	647,800,000	64,780,000	129,560,000	129,560,000	129,560,000	194,340,000
		101동2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11~20	40	298,320,000	353,780,000	–	652,100,000	65,210,000	130,420,000	130,420,000	130,420,000	195,630,000
		105동2호	11~20	10	298,320,000	364,380,000	–	662,700,000	66,270,000	132,540,000	132,540,000	132,540,000	198,810,000
		106동3호, 107동2호, 108동3호, 109동3호	11~20	40	298,320,000	343,180,000	–	641,500,000	64,150,000	128,300,000	128,300,000	128,300,000	192,450,000
		110동3호	11~20	10	298,320,000	353,780,000	–	652,100,000	65,210,000	130,420,000	130,420,000	130,420,000	195,630,000
		101동2호, 102동2호, 103동2호, 104동2호	21~29	22	298,320,000	357,980,000	–	656,300,000	65,630,000	131,260,000	131,260,000	131,260,000	196,890,000
		105동2호	21~23	3	298,320,000	368,680,000	–	667,000,000	66,700,000	133,400,000	133,400,000	133,400,000	200,100,000
		106동3호, 107동2호, 108동3호, 109동3호	21~29	23	298,320,000	347,380,000	–	645,700,000	64,570,000	129,140,000	129,140,000	129,140,000	193,710,000
		110동3호	21~23	3	298,320,000	357,980,000	–	656,300,000	65,630,000	131,260,000	131,260,000	131,260,000	196,890,000
84A	252	103동3호, 109동1호, 109동2호	1	3	341,487,000	325,213,000	–	666,700,000	66,670,000	133,340,000	133,340,000	133,340,000	200,010,000
		110동1호, 110동2호, 115동1호, 115동2호	1	4	341,487,000	339,613,000	–	681,100,000	68,110,000	136,220,000	136,220,000	136,220,000	204,330,000
		114동1호, 114동2호	1	2	341,487,000	333,613,000	–	675,100,000	67,510,000	135,020,000	135,020,000	135,020,000	202,530,000
		103동3호, 109동1호, 109동2호	2	3	341,487,000	340,213,000	–	681,700,000	68,170,000	136,340,000	136,340,000	136,340,000	204,510,000
		103동5호, 103동6호, 110동1호, 110동2호, 115동1호, 115동2호	2	6	341,487,000	354,513,000	–	696,000,000	69,600,000	139,200,000	139,200,000	139,200,000	208,800,000
		114동1호, 114동2호	2	2	341,487,000	348,513,000	–	690,000,000	69,000,000	138,000,000	138,000,000	138,000,000	207,000,000
		103동3호, 109동1호, 109동2호	3	3	341,487,000	355,113,000	–	696,600,000	69,660,000	139,320,000	139,320,000	139,320,000	208,980,000
		103동4호	3	1	341,487,000	361,113,000	–	702,600,000	70,260,000	140,520,000	140,520,000	140,520,000	210,780,000
		103동5호, 103동6호, 114동1호, 114동2호	3	4	341,487,000	363,513,000	–	705,000,000	70,500,000	141,000,000	141,000,000	141,000,000	211,500,000
		110동1호, 110동2호, 115동1호, 115동2호	3	4	341,487,000	369,513,000	–	711,000,000	71,1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213,300,000
		103동3호, 103동4호, 109동1호, 109동2호	4	4	341,487,000	361,113,000	–	702,600,000	70,260,000	140,520,000	140,520,000	140,520,000	210,780,000
		103동5호, 103동6호, 114동1호, 114동2호	4	4	341,487,000	369,513,000	–	711,000,000	71,100,000	142,200,000	142,200,000	142,200,000	213,300,000
		110동1호, 110동2호, 115동1호, 115동2호	4	4	341,487,000	375,413,000	–	716,900,000	71,690,000	143,380,000	143,380,000	143,380,000	215,070,000
		103동3호, 103동4호, 109동1호, 109동2호	5~10	24	341,487,000	373,013,000	–	714,500,000	71,450,000	142,900,000	142,900,000	142,900,000	214,350,000
		103동5호, 103동6호, 114동1호, 114동2호	5~10	24	341,487,000	381,413,000	–	722,900,000	72,290,000	144,580,000	144,580,000	144,580,000	216,870,000
		110동1호, 110동2호, 115동1호, 115동2호	5~10	24	341,487,000	387,413,000	–	728,900,000	72,890,000	145,780,000	145,780,000	145,780,000	218,670,000
		103동3호, 103동4호, 109동1호, 109동2호	11~20	40	341,487,000	377,813,000	–	719,300,000	71,930,000	143,860,000	143,860,000	143,860,000	215,790,000
		103동5호, 103동6호, 114동1호, 114동2호	11~20	40	341,487,000	386,213,000	–	727,700,000	72,770,000	145,540,000	145,540,000	145,540,000	218,310,000
		110동1호, 110동2호, 115동1호, 115동2호	11~20	40	341,487,000	392,213,000	–	733,700,000	73,370,000	146,740,000	146,740,000	146,740,000	220,110,000
		103동3호, 103동4호, 109동1호, 109동2호	21~23	8	341,487,000	382,613,000	–	724,100,000	72,410,000	144,820,000	144,820,000	144,820,000	217,230,000
		103동5호, 103동6호, 114동1호, 114동2호	21~23	8	341,487,000	391,013,000	–	732,500,000	73,250,000	146,500,000	146,500,000	146,500,000	219,750,000
84B	254	101동3호, 108동1호, 108동2호	1	3	341,359,000	328,441,000	–	669,800,000	66,980,000	133,960,000	133,960,000	133,960,000	200,940,000
		101동5호	1	1	341,359,000	336,741,000	–	678,100,000	67,810,000	135,620,000	135,620,000	135,620,000	203,430,000
		102동3호	1	1	341,359,000	333,141,000	–	674,500,000	67,450,000	134,900,000	134,900,000	134,900,000	202,350,000
		101동3호, 102동3호, 108동1호, 108동2호	2	4	341,359,000	343,241,000	–	684,600,000	68,460,000	136,920,000	136,920,000	136,920,000	205,380,000
		101동5호	2	1	341,359,000	351,541,000	–	692,900,000	69,290,000	138,580,000	138,580,000	138,580,000	207,870,000
		101동3호, 102동3호, 108동1호, 108동2호	3	4	341,359,000	358,141,000	–	699,500,000	69,950,000	139,900,000	139,900,000	139,900,000	209,850,000
		101동4호, 102동4호	3	2	341,359,000	364,041,000	–	705,400,000	70,540,000	141,080,000	141,080,000	141,080,000	211,620,000
		101동5호	3	1	341,359,000	366,441,000	–	707,800,000	70,780,000	141,560,000	141,560,000	141,560,000	212,340,000
		101동6호, 102동5호, 102동6호	3	3	341,359,000	372,441,000	–	713,800,000	71,380,000	142,760,000	142,760,000	142,760,000	214,140,000
		101동3호, 101동4호, 102동3호, 102동4호, 108동1호, 108동2호	4	6	341,359,000	364,041,000	–	705,400,000	70,540,000	141,080,000	141,080,000	141,080,000	211,620,000
		101동5호, 101동6호, 102동5호, 102동6호	4	4	341,359,000	372,441,000	–	713,800,000	71,380,000	142,760,000	142,760,000	142,760,000	214,140,000
		101동3호, 101동4호, 102동3호, 102동4호, 108동1호, 108동2호	5~10	36	341,359,000	375,941,000	–	717,300,000	71,730,000	143,460,000	143,460,000	143,460,000	215,190,000
		101동5호, 101동6호, 102동5호, 102동6호	5~10	24	341,359,000	384,341,000	–	725,700,000	72,570,000	145,140,000	145,140,000	145,140,000	217,710,000
		101동3호, 101동4호, 102동3호, 102동4호, 108동1호, 108동2호	11~20	60	341,359,000	380,741,000	–	722,100,000	72,210,000	144,420,000	144,420,000	144,420,000	216,630,000
		101동5호, 101동6호, 102동5호, 102동6호	11~20	40	341,359,000	389,041,000	–	730,400,000	73,040,000	146,080,000	146,080,000	146,080,000	219,120,000
		101동3호, 101동4호, 102동3호, 102동4호, 108동1호, 108동2호	21~29	36	341,359,000	385,541,000	–	726,900,000	72,690,000	145,380,000	145,380,000	145,380,000	218,070,000
		101동5호, 101동6호, 102동5호, 102동6호	21~28	28	341,359,000	393,841,000	–	735,200,000	73,520,000	147,040,000	147,040,000	147,040,000	220,560,000
84C	114	111동1호, 111동2호	1	2	341,465,000	338,335,000	–	679,800,000	67,980,000	135,960,000	135,960,000	135,960,000	203,940,000
		111동3호, 111동4호	1	2	341,465,000	332,335,000	–	673,800,000	67,380,000	134,760,000	134,760,000	134,760,000	202,140,000
		111동1호, 111동2호	2	2	341,465,000	353,235,000	–	694,700,000	69,470,000	138,940,000	138,940,000	138,940,000	208,410,000
		111동3호, 111동4호	2	2	341,465,000	347,235,000	–	688,700,000	68,870,000	137,740,000	137,740,000	137,740,000	206,610,000
		111동1호, 111동2호	3	2	341,465,000	368,135,000	–	709,600,000	70,960,000	141,920,000	141,920,000	141,920,000	212,880,000
		111동3호, 111동4호	3	2	341,465,000	362,135,000	–	703,600,000	70,360,000	140,720,000	140,720,000	140,720,000	211,080,000
		111동1호, 111동2호	4	2	341,465,000	374,135,000	–	715,600,000	71,560,000	143,120,000	143,120,000	143,120,000	214,680,000
		111동3호, 111동4호	4	2	341,465,000	368,135,000	–	709,600,000	70,960,000	141,920,000	141,920,000	141,920,000	212,880,000
		111동1호, 111동2호	5~10	12	341,465,000	386,035,000	–	727,500,000	72,750,000	145,500,000	145,500,000	145,500,000	218,250,000
		111동3호, 111동4호	5~10	12	341,465,000	380,035,000	–	721,500,000	72,150,000	144,300,000	144,300,000	144,300,000	216,450,000
		111동1호, 111동2호	11~20	20	341,465,000	390,835,000	–	732,300,000	73,230,000	146,460,000	146,460,000	146,460,000	219,690,000
		111동3호, 111동4호	11~20	20	341,465,000	384,835,000	–	726,300,000	72,630,000	145,260,000	145,260,000	145,260,000	217,890,000
		111동1호, 111동2호	21~29	18	341,465,000	395,535,000	–	737,000,000	73,700,000	147,400,000	147,400,000	147,400,000	221,100,000
		111동3호, 111동4호	21~28	16	341,465,000	389,635,000	–	731,100,000	73,110,000	146,220,000	146,220,000	146,220,000	219,330,000
99	70	104동5호	1	1	401,066,000	371,394,546	37,139,454	809,600,000	80,960,000	161,920,000	161,920,000	161,920,000	242,880,000
		104동5호	2	1	401,066,000	387,303,637	38,730,363	827,100,000	82,710,000	165,420,000	165,420,000	165,420,000	248,130,000
		104동6호	2	1	401,066,000	393,576,364	39,357,636	834,000,000	83,400,000	166,800,000	166,800,000	166,800,000	250,200,000
		105동5호	2	1	401,066,000	399,940,000	39,994,000	841,000,000	84,100,000	168,200,000	168,200,000	168,200,000	252,300,000
		104동5호, 104동6호	3	2	401,066,000	403,121,819	40,312,181	844,500,000	84,450,000	168,900,000	168,900,000	168,900,000	253,350,000
		105동5호	3	1	401,066,000	409,485,455	40,948,545	851,500,000	85,150,000	170,300,000	170,300,000	170,300,000	255,450,000
		105동6호	3	1	401,066,000	415,849,091	41,584,909	858,500,000	85,850,000	171,700,000	171,700,000	171,700,000	257,550,000
		104동5호, 104동6호	4	2	401,066,000	409,485,455	40,948,545	851,500,000	85,150,000	170,300,000	170,300,000	170,300,000	255,450,000
		105동5호, 105동6호	4	2	401,066,000	415,849,091	41,584,909	858,500,000	85,850,000	171,700,000	171,700,000	171,700,000	257,550,000
		104동5호, 104동6호	5~10	12	401,066,000	422,121,819	42,212,181	865,400,000	86,540,000	173,080,000	173,080,000	173,080,000	259,620,000
		105동5호, 105동6호	5~10	12	401,066,000	428,485,455	42,848,545	872,400,000	87,240,000	174,480,000	174,480,000	174,480,000	261,720,000
		104동5호, 104동6호	11~19	18	401,066,000	427,212,728	42,721,272	871,000,000	87,100,000	174,200,000	174,200,000	174,200,000	261,300,000
		105동5호, 105동6호	11~18	16	401,066,000	433,576,364	43,357,636	878,000,000	87,8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263,400,000

II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12월 4일(월)	12월 5일(화)	12월 6일(수)	12월 12일(화)	12월 13일(수) ~ 21(목) 9일간	12월 26일(화) ~ 28일(목) 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방문 (10:00~17:00) ※ 방문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소	• 견본주택(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견본주택 (인천시 서구 왕길동 315) ※ 서류접수 제출일 및 계약일정에 대한 운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예약 및 일정 변경 시 추후 통보예정임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47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5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1.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41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2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청약자격 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1.2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IV 일반공급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경기도,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봅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12개월)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3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400만원	1,0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V 사업주체 등 현황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전기	소방/정보통신
회사명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이룸이앤씨
감리금액(VAT포함)	4,321,545,800원	723,855,000원	830,500,000원

■ 사업관계자 현황

구분	시행위탁자	시공사	시행수탁자
상호	㈜디케이퍼스트	㈜대우건설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58 (역삼동, 20층)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법인등록번호	110111-6341848	110111-2137895	110111-1714818

■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택전시관 안내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315** ■ **운영기간 : 2023.11.24(금) ~ 분양 종료 시**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의 관람이 불가 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관람 가능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견본주택 대표번호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10:00~18: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견본주택 입장 및 상담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1833-3558**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